



기타 주요 정보 및 이슈

미국의 타이어 안전 및 구매 관련 조사 결과

1.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관련 조사 결과 (미국고무협회)

미국고무협회(RMA)가 미국 31개 도시 타이어 소매점에서 6,300대 이상 차량의 타이어 트레드를 검사한 결과, 약 11% 차량이 마모가 다 된 적어도 1개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전역 2,800만대의 차량이 적어도 1개의 마모가 다 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RMA가 2009년 5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에서, 운전자 중 64%가 트레드 깊이를 점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운전자 중 9%가 트레드 깊이 (마모) 점검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이어 공기압과 관련한 RMA의 금년 5월 조사에서는, 차량 중 단지 17%만이 4개 타이어 모두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량 중 55%가 적어도 1개의 공기압 부족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5월 운전자 대상 전화 조사에서는 미국 운전자 중 85%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미국고무협회(RMA) 홈페이지 〉

2. 미국 타이어 구입 관련 조사 결과 (컨슈머 리포트)

미국 소비자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인 컨슈머 리포트 (Consumer Report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 구입자의 95%가 타이어 소매점 구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자의 절반 이상이 타이어 구입 이전에 구입할 제품에 대한 사전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는 무작위로 미국 전역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지난해 타이어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2,028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였으며, 응답자 중 44%가 구매할 타이어를 찾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35세 미만의 응답자 중 단지 39%가 구입할 제품을 조사하였고, 반면 55세 이상 응답자 중에는 49%가 조사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성 중 69%가 대부분 스스로 타이어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반면 스스로 타이어를 구입한다는 여성은 41%였으며, 여성은 타이어관련 정비업소의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았다.

구입할 제품에 대한 정보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46%가 타이어관련 정비업소였으며, 온라인 리뷰와 기사가 44%, 온라인 광고 32%, 친구나 친척 등 지인이 30%, 뉴스 리뷰나 기사 20%, 신문 광고 18%, 잡지광고가 9%, 그리고 TV 광고 8%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51%가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구입한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판매점 11%, 창고형 매장 9%, 백화점 8%, 온라인을 통한 구매 2% 순으로 나타났다.

타이어 모델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자 중 29%가 가격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편의성 (Availability) 18%, 트레드 사용수명 13%, 눈길 제동성 9%, 마른 노면 및 젖은 노면 제동성 6%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명의 응답자 중 단지 1명이 연비효율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타이어 교체 시, 응답자 중 65%가 한번에 4개 타이어를 모두 교체한다고 답변하였고, 22%가 2개 타이어를, 11%가 1개 타이어를 교체한다고 응답하였다.

〈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2010.11.22일자 〉

WTO, "중국산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부과는 적법" 판결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고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의 분쟁조정패널은 이날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타이어 관세에 대한 중국 측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으며, WTO는 판결에서 "미국이 중국산 승용차 및 경화물차 타이어에 과도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해 징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판결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조치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으며, 빌 라인시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회장은 "세이프가드의 적법성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놀랍지 않다"며 "중국은 이번 결정에 격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의 이번 판결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미중 연례통상무역위원회(JCCT) 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표되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WTO의 이 같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상무부는 이날 부처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그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그런 결정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관련 패널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후 중국 산업의 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산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부과조치 배경을 보면, 중국산 타이어 수입량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3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 철강노조는 증가하는 중국산 타이어 수입은 국내 산업기반을 크게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철강노조의 청원을 받아들여 중국의 WTO 가입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2009년 9월 26일부터 3년간 25~35% (1차년도 35%, 2차년도 30%, 3차년도 25%)의 징벌적 고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가 있는 지 사흘 후 "미국 정부의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심각한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하였다.

< 자료원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머니투데이 (2010.12.14일자)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필요성 증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0.12.9일 'TBT Korea 2010' 컨퍼런스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본 고는 동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던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 무역기술장벽 및 WTO/TBT 협정의 개요

국제무역상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 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제품시장이 국가별로 서로 다르면, 각국의 제조업자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기술 기준이나 표준에 개별적으로 맞추기 위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면서 수출품 생산비용의 상승 등이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술장벽이 된다.

무역기술장벽은 GATT 체제 하에서 세계 주요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되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GATT/TBT 협정이 채택되었다. 동 협정은 세계 무역환경이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협정이 되었는데, WTO 협정의 부속서중의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WT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관련 규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 ▶ 표준 (Standard) :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비강제적인 문서
- ▶ 적합성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특정제품이 기존에 설정된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 협정은 우선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준비,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하며, 제정 또는 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

국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통보문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을 부여(최소 60일, 가능한 경우 90일 이상 권장)하고 있으며, 기술규정에 대한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TBT 통보문 증가 및 대응 필요성 확대

최근 몇 년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세계 각국 기술규제 통보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771건이던 통보문 건수는 2009년에는 1,49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WTO/TBT 통보문 건수 증가 현황〉

연도	'05	'06	'07	'08	'09	'10.9월말
통보건수	771	875	1,031	1,251	1,490	1,108

선진국의 경우 통보문 내용은 에너지효율강화, 신기술 인증, 안전기준 강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통보건수는 감소하나 파급효과가 큰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식품 분야 라벨링, 포장규격 관련 규제가 큰 비중 차지하면서 통보건수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상품목도 광범위 하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무역기술장벽이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무역기술장벽 형태는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동국가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상품표시부착과 검사에 대해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요건을 부가하는 사례가 있다.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수송장비, 전자 및 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소비재공산품, 전기 및 가전제품 등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무역기술장벽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대응에 있어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파악이 시행시기가 임박하거나 혹은 문제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미흡, 기술규제 대응 활동전개를 위한 이해 당사자별 전문가 부족 등 많은 대응상의 문제가 있어, 민관 공동으로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TBT 대응 관련 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www.knowtbt.kr) 